

韓國馬事會法

(1962. 1. 20公布)
(法律第1012號)

第1條 (目的) 本法은韓國馬事會의 組織運營과競馬에關한事項을規定함으로써 馬匹의改良增殖과馬事의振興및畜產의發展에 寄與하게 함을目的으로한다

第2條 (法人格) 韓國馬事會(以下馬事會라한다)는法人으로한다

第3條 (事務所) 馬事會는主된事務所를서울特別市에 두고必要한곳에支事務所를둘수있다

第4條 (登記) ① 馬事會는主된事務所所在지에서다음의事項을登記함으로써成立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의年月日

5. 資產의總額

6. 會長, 常任理事, 理事와監事의住所姓名

② 前項各號의事項中變更이생겼을때에는 3週間內에主된事務所의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③ 前項의規定에依하여登記하여야할事項은登記後가아니면第3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第5條 (類似名稱使用禁止) 本法에依한馬事會가아니면이와類似한名稱을使用하지못한다

第6條 (免稅) 馬事會에對하여는所得稅, 法人稅, 營業稅및登錄稅를賦課하지아니한다

第7條 (定款) ① 馬事會의定款에는다음의事項을規定하여야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任員에關한規定

5. 事業과執行

6. 資產에關한規定

7. 定款의變更에關한規定

② 定款의變更은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지아니하면 그effort을發生하지아니한다

第8條 (規約) ① 馬事會는法令과定款의範圍内에서다음의事項에關하여規約를制定할수있다

1. 競馬의施行에關한事項

2. 勝馬投票에關한事項

3. 會計에關한事項

4. 任員의報酬, 職員의定數, 任免 및給與에關한事項

② 馬事會는規約을定하거나變更하고자할때에는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第9條 (任員) 馬事會에다음의任員을둔다

1. 會長 1人

2. 常任理事 2人以內

3. 理事 5人以內

4. 常任監事 1人

5. 監事 1人

第10條 (任員의職務) ① 會長은馬事會를代表하며會務를統理하고理事會의議長이된다

② 常任理事는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會長을補佐하며會務를執行하고會長이事務가있을때에는그職務를代行한다

③ 監事는馬事會의財產과業務執行狀況을監查하며理事會에參席하여發言할있으나票決權은없으며監查結果를農林部長官에게報告할수있다

第11條 (任員의任期) ① 會長, 常任理事, 理事와監查는그職務에必要한學識과經驗이豐富한者中에서農林部長官이任命한다

② 會長, 常任理事와理事의任期는 3年으로하고監事의任期는2年으로한다

③ 任員의任期는任命한날로부터起算한다

第12條 (任員의缺格事由)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者는馬事會의任員이되지못한다

1.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또는破產者로서復權되지 아니한다

2. 禁錮以上의刑을받고그執行이終了되거나執行을받지아니하기로確定된後3年을經過하지아니한者

3. 馬事會가行하는競馬에關한馬匹의所有者

4. 國會議員, 公務員, 地方議會議員 및政黨의幹部

第13條 (兼職禁止) 馬事會의常任任員은營利를目的으로하는團體의任員이되거나營利事業에從事하지못한다. 但農林部長官의許可를받았을때에는例外로한다

第14條 (代表權의制限) ① 馬事會와會長, 常任理事 또는理事와의利益이相反하는事項에關하여는常任理

- 事가馬事會를代表한다
- ② 馬事會와會長, 常任理事또는理事와의 訴訟에 關하여 도前項과 같다
- 第15條 (理事會)** ① 理事會는會長, 常任理事와理事로써構成하여 會長이 이를召集한다
- ② 다음의 事項은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收支豫算과事業計劃
 2. 收支決算
 3. 定款의 變更
 4. 不動產의 處分
 5. 規約의 制定 및 變更
 6. 幹部職員의 任免
 7. 其他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할 事項
- ③ 會議의 議決은 構成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3分의 2以上의 賛成으로써 이를 行한다
- 第16條 (民法의 準用)** 民法第35條과 第36條의 規定은 馬事會에 이를 準用한다
- 第17條 (事業의範圍)** 馬事會는 그目的을達成하기 为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馬匹의 輸入, 生產, 育成 및 改良增殖
 2. 馬匹利用의 指導獎勵
 3. 競馬의 開催
 4. 馬匹衛生에 關한 事業
 5. 馬事에 關한 調査研究
 6. 其他本法의 目的을達成하기 为하여 必要한 事業
- 第18條 (事業計劃)** 馬事會는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19條 (收支豫算)** 馬事會는 每事業年度의 收入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當該事業年度開始前에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0條 (事業年度)** 馬事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 度에 準한다
- 第21條 (借入金)** 馬事會는 資金을 借入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第22條 (資金의 運用)** 馬事會는 다음의 方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業務上 資金을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金融機關에 的 預金
 2. 國債 other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有價證券의 取得
- 第23條 (財產處分의 制限)** 馬事會는 農林部長官의 認可 없이 그所有 不動產을 讓與, 交換하거나 擔保의 提供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지 못한다
- 第24條 (損失補填準備金)** ① 馬事會는 閣令으로 定하는 額에 達할 때 까지 勝馬投票券發資金의 百分의 1以上을 損失補填準備金으로 積立하여 야한다
- ② 前項의 準備金은 損失補填에 充當하는 境遇에 限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支出할 수 있다
- 第25條 (特別積立金)** ① 馬事會는 前條의 積立을 하고 도剩餘가 있을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別積立金으로 積立하여 야한다
- ② 前項의 特別積立金은 馬匹의改良增殖, 乘馬團體育成, 競馬施設의改善과 畜産振興을 为하여 必要한 經費에 充當한다
-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積立金을支出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26條 (收支決算書)** 馬事會는 每事業年度의 收支決算書, 財產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를 作成하여 當該事業年度 經過後 2月 以內에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하여 야 한다
- 第27條 (監督)** 馬事會는 農林部長官이 監督한다
- 第28條 (命令 및 處分)** 農林部長官은 本法을 施行하기 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馬事會에 對하여 業務에 關한 監督上必要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
- 第29條 (報告書)** 馬事會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事業에 關한 諸般 計算과 狀況의 報告書를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하여 야 한다
- 第30條 (理事會出席)**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公務員은 馬事會의 理事會其他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31條 (検査)** ① 農林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馬事會에 對하여 報告시키거나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 또는 競馬場의 業務 狀況 또는 帳簿, 書類 other 必要한 物件의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務員이 檢查하는 境遇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 야 한다
- ③ 審計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馬事會의 會計經理를 檢查할 수 있다
- 第32條 (任員의 解任)** ① 農林部長官은 馬事會의 任員이 第12條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이를 解任하여 야 한다
- ② 農林部長官은 馬事會의 任員이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이를 解任할 수 있다
1. 本法 및 本法에 依據한 命令 또는 定款, 規約에 違反하였을 때

2. 心身의 故障으로 因하여 職務를 執行 할 수 없을 때

第33條 (競馬의 開催) 馬事會는 本法에 依하여 競馬를 開催한다.

第34條 (類似行爲의 禁止) 馬事會가 아니면 勝馬投票券을 發賣하거나 投票의 中者에 對하여 金錢을 交付하는 競馬其他이에 類似한 行爲를 할 수 없다.

第35條 (競馬場) 馬事會의 競馬場에 關하여는 闈令으로 定한다.

第36條 (競馬의 施行) ① 競馬를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闈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競馬의 開催期間은 每回 9日 以內로 한다.

第37條 (入场料) 競馬를 開催할 때에는 入場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38條 (勝馬投票券) 馬事會는 競馬를 開催할 때에 闈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勝馬投票券을 發賣할 수 있다.

第39條 (勝馬投票券의 發賣制限) ① 未成年者에 對하여는 勝馬投票券을 發賣하지 못한다.

② 馬事會의 任員 또는 當該 競馬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에 對하여도 勝馬投票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0條 (勝馬投票方法) ① 勝馬投票方法은 單勝式, 復勝式, 雙勝式連勝式 및 特別勝馬式(福券)의 5種으로 한다.

② 勝馬投票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闈令으로 定한다.

第41條 (還給金) ① 馬事會는 勝馬投票의 中者에 對하여 闈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 競走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發賣金額中에서 還給金을 交付한다.

② 勝馬投票의 中者가 없는 境遇의 發賣金은 闈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勝馬投票券을 購賣한 者에게 割當하여야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한 還給金의 債權은 1年間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된다.

第42條 (入场料等의 認可) 入場料의 金額, 勝馬投票券의 券面額, 種類, 發賣方法과 還給金의 支拂方法에 對하여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3條 (發賣收得金) 馬事會는 勝馬投票券의 賣得金額에 對하여 闈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이 定하는 比率의 金額을 發賣收得金으로 收得할 수 있다. 但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失補填金과 發賣收得金額의 合計는 發賣金의 百分의 20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44條 (調教師 및 騎手의 免許) 馬事會가 行하는 考查에 合格한 調教師 및 騎手에 對하여 免許證을 交付하며 이 免許證이 없는 者는 競走馬의 調教 또는 騎乘을 할 수 없다.

第45條 (開催執務委員) 馬事會가 競馬를 開催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 競馬에 關한 事務를 執行시키기 爲하여 闈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開催執務委員을 둘 수 있다.

第46條 (競馬場의 團束) 競馬場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競馬의 公正을 確保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闈令으로 定한다.

第47條 (罰罰)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3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本法에 依한 競馬에 關하여 営利를 目的으로 賭賭을 한 者 또는 이를 幫助한 者
3. 馬事會의 任員이나 競馬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監督의 地位에 있는 者로서 前號에 規定한 行爲의 相對가 된 者

第48條 (同前)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の 懲役 또는 15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馬匹의 競走 ability을 一時의 으로 높이거나 주리는 藥劑를 使用하여 馬匹을 出走시킨 者
2. 競走에 關하여 財產上의 利益을 얻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爲하여 競走에서 馬匹의 全能力을 發揮 시키지 아니한 騎手

第49條 (同前)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馬事會의 任員이나 競馬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監督의 地位에 있는 者로서 勝馬投票券을 購買하거나 그 斡旋을 한 者

第50條 (同前) 馬事會의 任員 또는 開催執務委員으로서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本法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아야 할 事項에 關하여 그 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한 때
2. 第24條, 第25條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農林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때
4.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慢怠하거나 虛偽의 陳述 또는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第51條 (同前)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廢止法令) 西紀 1942年 2月 制令 第1號 朝鮮馬事會令 은 이를 廢止한다.
- ③ (同前) 西紀 1925年 4月 舊法令 第42號 競馬法은 이를 廢止한다.
- ④ (經過措置) 本法施行當時의 朝鮮馬事會는 本法施行日에 本法에 依하여 設立한 韓國馬事會로 본다.
- ⑤ (同前) 本法施行當時의 韓國馬事會의 任員은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但 그 任期는 本法施行日로부터 起算한다.